



정교교육통신

- 교육목표 -
도덕인, 자주인
창의인, 건강인

(우)11167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정금로 77 ☎ 교무실:543-3602, 행정실:542-1231, FAX:542-3604

가정폭력·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방법 안내

본교에서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학부모님께서도 건전한 가족 문화 유도와 따뜻한 관심으로 아이들이 몸도 마음도 더욱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자가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가정폭력이란? 가정구성원 사이의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으로 신체적·정신적·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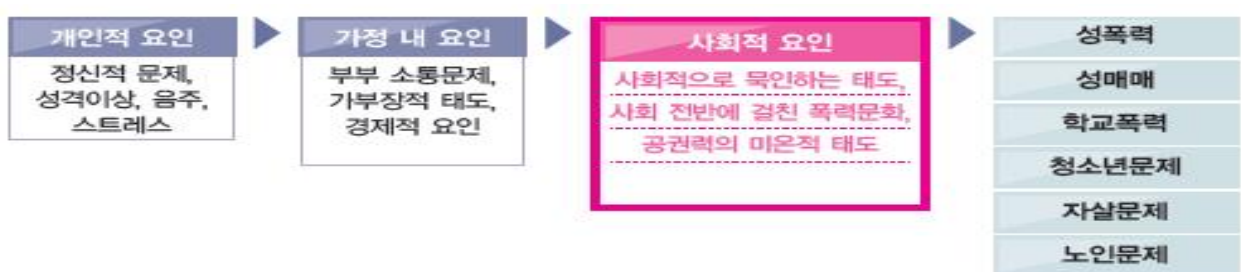
★ 가정구성원의 범위

- 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)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
-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(사실상 양친자관계 포함)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-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- 동거하는 친족

★ 가정폭력의 유형

- **신체적 학대** :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손상을 가하는 행위
- **정서적 학대** : 무시하기, 죄책감이나 모욕감, 물건파손, 폭언하기, 정서적 충격을 주는 행위 등
- **자녀 이용** :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떼어놓겠고 위협하기, 배우자를 학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등
- **협박, 위협, 고립** : 눈빛, 행동, 제스처로 협박 및 물건파손, 애완동물학대, 무기전시, 배우자가 있는 장소를 추적하고 사회적 관계를 통제하기 등
- **성학대** : 원치 않는 성관계,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 등
- **경제적 학대** :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기,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사처분, 생활비 주지 않기 등

★ 가정폭력의 파급력



★ 가정폭력 신고방법

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면,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 등의 시 상담소 또는 보호 시설에 연계하거나,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드립니다.

- 피해자 긴급구호 : 여성긴급전화(☎ 1366), 다누리콜(☎ 1577-1366 또는 1577-5432)
- 무료 법률지원 : 대한법률구조공단(☎ 132), 한국가정법률상담소(☎ 1644-7077)
- 피해치료 지원 : 지자체, 여성긴급전화1366센터, 보호시설, 상담소, 원스톱지원센터 등

2. 아동학대란?

구 분	정 의	비고(관련법률)
아동학대	아동(18세 미만)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, 유기 및 방임	아동복지법 제3조
아동학대범죄	상해, 폭행, 특수폭행, 폭행치사, 유기, 학대, 아동학사, 체포, 감금, 협박, 약취, 유인 및 인신매매, 강제 성관계, 유사 강제 성관계, 강제 추행, 준강제성폭행, 준강제추행,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추행,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, 명예훼손,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, 모욕, 주거침입(주거·신체 수색)의 죄, 강요, 공갈, 재물손괴 등	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

★ 『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』 안내

- 아동학대치사(제4조) :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- 아동학대중상처(5조) : 3년 이상의 징역

★ 아동학대 발견시 조치 요령

언제?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아동의 울음소리, 비명,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▶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▶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는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▶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▶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행동을 보이는 경우
무엇을?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신고자의 이름, 연락처 ▶ 아동의 이름, 성별, 나이, 주소 ▶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, 성별, 나이, 주소 ▶ 아동이 위협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
어떻게?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국번 없이 ☎ 112 ※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해 보장됩니다.

★ 학부모가 알아야 할 아동 학대

- 아동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모두 아동학대입니다.
-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방치하는 것(방임)은 아동학대입니다.
- 아동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것 또한 아동학대입니다.
- 아동의 복지나 정상적인 발달(건강)을 저해하는 것은 아동학대입니다.
예) 의식주 등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 등

★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

- 자녀가 자율적인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. 존중받는 아이가 타인을 존중하고 책임있는 생활을 합니다.
-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선생님과 상담을 하세요 (**학교 선생님, 각 교육지원청 Wee센터 상담신청**).
- 가정에서의 폭력이나 부모님의 모습은 자녀에게 학습됩니다. 부모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아동학대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.
- 자녀에게 처벌이나 지시보다는 함께 생각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마음이 가장 필요합니다.

2023. 3. 9.

정 교 초 등 학 교 장